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1월 22일, 이상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3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6.03.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19.)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23.) 상정, 축조심사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27.) 상정

제434회 국회(임사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4.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5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6.04.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상회의원)

현행법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치구·시·군 당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에 대하여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나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군 당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워진 상황임. 이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 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경우에는 단독 시·도의원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지고, 인근 선거구와의 통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현재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을 위해서는 시·도의원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 지역의 경우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부 예외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의원지역구간 인구편차 기준(상하 50%)을 명시하되,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 지역

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편차 기준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단서 삭제, 제26조제1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조문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